

영등포구의회  
제15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10. 9. 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10. 8. 19.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 ■ 제정(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안 제3조)

-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 관련법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산구, 중랑구, 마포구,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등

##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2007.7.1. 시행)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설비 등 재정 지원·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사회적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촉진과 판로개척·조세감면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부터 제18조에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우리구 관내 민간기업·단체 등의 참여기업 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 9. 7.

보 고 자 : 이 남 식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관 련 법 령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8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2.31>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법 제4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제9조(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①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9.6.30>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하 "사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 ■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참고자료

##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법 제7조)을 받은 자를 말함.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성격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면서 이윤을 창출하고, 창출된 이윤은 다시 사회적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임.

## ◆ 예비사회적기업(Preliminary Social enterprise) 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을 의미함

사회적기업과 같이 정부의 인증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향후 사회적기업 전환을 준비하는 기관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뜻하며 노동부 인증을 거쳐야하나, 서울형예비사회적기업은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자금 및 경영 지원을 통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의 서울시 고용창출 사업임.

## ◆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현황

2010. 8. 31. 현재

유 형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노동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38	17	9	12